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홍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7
----------	-----

발의년월일 : 2024년 2월 13일

발 의 자 : 홍정희·서호성·주이삭·
박경희·강민하·김양희
의원 (6명)

찬 성 자 : 이용준·안양식·김덕현·
박진우 의원 (4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수익금을 활용하여 관내 학교 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관외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장학금의 재원 및 종류(안 제3조~제4조)

다. 장학금 지원 대상·액수·인원·지급방법(안 제5조)

라. 장학생 추천 및 선발(안 제6조)

마. 장학금 중복지급 및 장학생의 의무(안 제7조~제8조)

바. 장학금 지급중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제4조, 제17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관계부서: 청년정책과

2) 입법예고: 2024. 2. 00. ~ 2024. 2. 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2. 장학생 모집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외에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제3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카페 폭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 지역사회 발전 등 기여장학금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급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봉사활동,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 등으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장학금은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장학금 액수 및 장학생 선발인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수익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청 부서장 등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는 경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중복지급) 장학금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한 경우
2. 장학생이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추천권자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중단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 운영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카페 폭포”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카페를 말한다.
4. “매출액”이란 카페의 판매사업을 통한 수입 전체를 말한다.
5. “수익금”이란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페 폭포 및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카페 폭포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카페 폭포의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카페 폭포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이하 “카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차, 음료, 과자, 빵 등의 판매

2.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장소 등 제공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카페의 위치는 서대문구 연희로 262-24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의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
3. 청년 등을 위한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
4.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5. 카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인건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